

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
(심사보고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'99. 10. 5
- 나. 제출자 : 사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'99. 10. 5(의안 제49호)

2. 제안이유

- .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- 나. 국내외투자가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및 조성된 기금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다.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자의 범위를 정하고, 입지보조금, 고용보조금, 교육훈련보조금, 시설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함(안 제12조 내지 제15조)
- 라.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및 입지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 내지 제17조)
- 마. 국내기업의 관내 창업 또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함(안 제19조 내지 제20조)
- 바. 국내외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도비등이 수반되는

보조금의 시비 분담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21조)

4. 법적근거

- 가. 외국인투자촉진법
- 나.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
- 다. 같은조례시행규칙

5. 전문위원검토요지

- 가. 동 조례의 핵심은 제3장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
- 나. 지방세의 감면은 사천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
- 다. 입지보조금을 정상적인 분양가의 50%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
- 라. 고용보조금을 기업당 2억원 내에서 상시고용 인원이 3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.
- 마. 교육훈련보조금을 기업당 2억원 내에서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등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
- 바. 이는 앞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써,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됨.
- 사. 따라서 각종 혜택을 받고 유치된 기업이 우리 지역 경제 활력화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,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.

6. 질의및답변요지 : 없음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)